

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(제24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	지 정 요 건
1. 운영 및 관리	가.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나.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. 나목의 조직에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·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라.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
2. 공원시설	가. 도로·광장, 조경시설, 휴양시설, 편익시설,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나.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

비고

국가도시공원 지정신청 시 위 표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은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